정　　관

제정 1999. 9. 9
변경 2009. 2. 2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를 **한국인명구조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Korean Kennel Club of Rescue Dog**(약어 KKCRD)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인명구조견의 기술개발, 양성,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전한 사회단체로 봉사한다. 특히 재난으로 인한 구조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인명구조견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에 지회 또는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이행한다.

1. 인명구조견의 지원사업
   가. 재난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명구조견의 양성, 보급, 지원 사업
   나. 구조견의 훈련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전문가 초청 교육 사업
   다. 전국민의 구조견 요청 시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구성원 조직 사업
   라. 구조견의 학술연구 세미나 및 교육사업
2. 국내외 홍보 유치사업
   가. 구조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능력 견종의 선별을 위한 각종 행사사업
   나. 인명구조견에 관한 교양강좌, 세미나, 논문발표 및 회지발간 등 홍보사업
3. 기타 부대사업
   가. 본 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지원사업

제5조(조직) 본회는 이사회, 심사위원회, 훈련사회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구조견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헌신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정관 등 기타 규정을 준수하는 자에 한한다.

제7조(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규정에 의한 입회 신청 서류를 기록하여 본회 또는 지회로 신청, 입회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인명구조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헌신적인 정신이 있는 자로서 정관에 의한 제반 수속을 필한 자
2. 특별회원 : 지회장, 심사위원, 훈련사, 관리사, 핸들러는 종신의 특별회원으로 한다.
   (단, 정회원도 신청에 의해 가능함)
3. 명예회원 : 구조견에 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9조(탈퇴) ① 본회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본회에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 자동 탈퇴로 한다.

1. 자격상실자　　2. 사망자　　3. 본회 해산시

제10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한다. 이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상벌) 본회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이나 또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회비) 회비는 매년 만기일내에 납입해야 하며, 회비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회 임원은 5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되 회장, 부회장 약간명, 이사,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제14조(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선출) ①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총회에서 추천 및 선출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별도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과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전무이사는 본회 사무국의 업무와 재정을 담당한다.

⑤ 감사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제17조(명예직 임원) ① 본회에는 명예임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② 명예임원은 필요시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명예임원은 의결이나 표결권은 갖지 못하며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본회를 탈퇴한다.

1. 명예직 임원 자신이 탈퇴 의사 신청이 있을 때,
2. 사망 또는 퇴임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 제25조에 의한다.

제19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1회 소집한다.
② 총회는 개최 일주일(7일)전까지 그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대의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 2이상 요청이 있을 때
3. 대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로써 외의 목적 및 안건을 회장에게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청한 때

②임시총회는 개최 2주(14일)전까지 그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 의결 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본회)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각종 요금 조정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권) 대의원은 총회에서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23조(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서 가부를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관 개정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의결권의 대리) 회의에 불참한 대의원의 위임은 정족수로는 인정하되 의결권은 일체 행사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 본회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 2. 부장 심사위원 이상 3. 각지회 지회장 3분의 1이상
4. 1등 훈련사 3분의 1이상 5. 사무국 사무장 이상

제26조(의결 사항의 통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서면으로 회원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프로그램, 회지 또는 기관지에 게재함으로써 전항의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회장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 한다.
③임시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 또는 전무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 3분의 2이상 요청이 있을 때

제28조(개최 통지) 이사회는 개최 일주일(7일)전까지 그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및 예산·결산서 작성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세부 시행규정, 제정등 기타 주요사항

제30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서 가부를 결정하며 이사는 불참석 이사의 위임장을 가지고 출석하여 정족수로는 인정하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1조 (의사록) 의사록은 회의 의사의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 및 참석이사 3분의 1이상 기명 날인을 받아 사무국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전문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 운영에 관계되는 전문적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이사회가 정한다.

제33조 (사무국) 본회 이사회의 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희사기금 및 본회 사업 또는 소유 자산에서 얻는 수입 등으로 한다.

제35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6조(회계) ① 본회의 회계는 수지결산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방식을 따른다.

②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의 활용 실적에 대해서는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공개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및 기타 실비를 변상 받을 수 있다.

② 상근직 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7장 해 산

제38조(해산사유) 본회의 해산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시,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39조(해산) ① 본회가 해산할 때는 총회의 승인으로 이사회가 청산인이 된다. 단, 기존 자산에 관한 수입, 지출, 미수금, 차입금, 징수반제 등 일체는 본회 이사회가 청산인으로 한다.

②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자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 시킨다.

제8장 보 칙

제1조(규정 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세칙)중 인명구조견 및 구조견 훈련사 관련 규정(세칙)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거나 변경한다.

제2조(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2/3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

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일) 사단법인 한국인명구조견협회의 정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